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25-003호

## 2025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25년도 제2차 『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』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**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**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6월 5일

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

# I.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

- 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'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'를 확인하시기 비랍니다.
- 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공고단위 (RFP 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 대상	과제구성 요건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
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	1. 필수예방접종자급화	1,000백만원/년 (1차년도 750백만원)	3년 이내 (1차년도 9개월)	산·학· 연·병	기업 참여 필수	4
	2. 미래대응·미해결	1,000~1,500백만원/년 (1차년도 750~1,125백만원)	3년이내 (1차년도 9개월)	산·학· 연·병	기업 참여 필수	3

### Ⅱ. 신청요건

### 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 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 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- ※ 상세 지원대상은 제안요청서(RFP)별로 확인 필요
- 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- 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- 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### 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
  - 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
  - ·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### 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 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1항에 따라 연구자 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
#### 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	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	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급여한구시	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
- 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### Ⅲ.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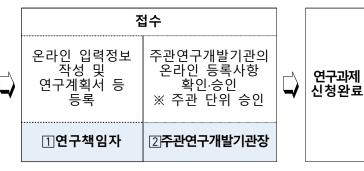
### □ 공고 및 접수처

- 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\*(https://www.iris.go.kr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  - 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-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사업공고
  - ②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(www.vitalkorea.kr) 사업공고
- (접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### □ 신청절차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	
연구(책임)자가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	
① <b>연구자</b>	② <b>연구개발기관</b>		



- 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- 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
  - 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- 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-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- 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  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 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**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**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- 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#### □ 공고 및 접수기한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공고단위 (RFP)	공고기간	연구책임자 과제신청마감(전산입력) <sup>*</sup>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마감 일시 <sup>**</sup>
공통	2025. 6. 5. (목) ~ 2025. 7. 4. (금) 15 : 00	2025. 7. 4. (금) 15:00	2025. 7. 4. (금) 15:00

- \*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
- \*\*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
- ※ 신청 마감 시간(15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- ※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**기간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** 대상에서 제외됨
- ※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(마감 2일전부터)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 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

### Ⅳ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□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시행 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
  - \*\* 상세내용은 www.iris.go.kr  $\to$  알림·고객  $\to$  자료실  $\to$  국가R&D법령·매뉴얼 혹은 www.htdream.kr  $\to$  자료실  $\to$  법규/서식에서 확인 가능
  - 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

### Ⅴ. 기 타

### 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(2025.3.6.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-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여그게바기교 오취	연구개빌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		
연구개발기관 유형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현금 부담 비율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	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	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	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	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 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나. 연구시설·장비비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= —	기관부담연구개발비 x 100 (해당 연구개발기관)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

<sup>※</sup>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
### 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
 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'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

### 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○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 의를 받아야 함

### 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○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'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'의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후,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
### 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(영리기관·비영리기관 모두 해당)

#### 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## Ⅵ. 문의처

### □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(www.vitalkorea.kr)

## □ 사업별 담당자 안내

○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
\*\*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 $^{\sim}$  18:00

○ 사업내용 및 평가일정/절차 관련 : 사업단 담당자

공고단위(RFP)	사업내용(RFP) 안내		평가일정/절차 안내		
oπ⊓µ(krr)	담당자	연락처	담당자	연락처	
1. 필수예방접종자급화	유지은	yuji97	전지나	jina9	
2. 미래대응·미해결	ㅠ시ㄷ	@yonsei.ac.kr 02-2228-0338		@yonsei.ac.kr 02-2228-0339	